

『베트남, 적합성 선언 · 적합성 인증 · 표준 및 기술 규정 준수 평가 방법』

2026. 05. 07.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제품
통보국	베트남	전년도 수출액 (천불)	62,772,716 (2025년 기준)
작성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표준·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합 정비하고, 전자등록 체계와 위험도 기반 적합성 평가 방식을 규정
- (적용범위) 제품·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공정,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에 적용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절차, 제품 위험도 기반 적합성 평가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함
- (인증정보) 베트남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평가 제도
 - (인증절차) 표준 적합성 선언은 평가 또는 자가평가 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통보 및 문서를 보관하고,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은 인증 또는 지정·인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자체평가 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CR 표시·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됨
 - (유효기간) 인증서 유효기간은 방식 및 품목별 QCVN에 따름
 - (기타사항) 제품 변경 시 재선언 또는 재등록이 요구될 수 있으며, 부적합 제품은 감독·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미국) 분야별 규제기관(FCC, OSHA 등)이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시험 및 인증제도를 개별 운영
 - (EU) CE 마킹 체계를 기반으로 제조자 적합성 선언 및 제품별 적합성평가 절차를 운영

- (일본) JIS 임의 표시제도와 PSE·PSC 등 법적 안전표시 제도를 병행 운영
- (중국) CCC 강제인증 체계를 통해 형식시험, 공장심사 및 사후 감독을 통합 운영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제품별 적용 QCVN 및 적합성 인증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시험, 인증, 감독평가 및 문서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제품별 적용 기술규정 및 적합성 인증방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기관·시험기관과 대응절차 진행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전자 등록 및 문서관리 부담 증가)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자 등록, 적합성 선언 자료 제출 및 문서보관 의무로 인해 인증 대응 및 행정 부담이 증가 가능
- (시험비용 부담 증가) 제품별 QCVN, 인증 방식 및 감독 평가 요구에 따라 시험·인증·감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QCVN 적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외부 시험·인증 기관과 연계하여 최소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 제품군별 적용 QCVN, 인증절차 및 감독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ERP 및 규제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증서, 적합표시 및 재선언 사항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4
III. 관련 인증 정보	12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5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5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7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8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8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21
VI. 대응 방안	23
참고 1 참고자료	24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25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Declaration of Conformity, Certification of Conformity and Methods of Assessing Conformity with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국문	적합성 선언·적합성 인증·표준 및 기술 규정 준수 평가 방법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베트남	
채택(예정)일	2026. 04. 09.	시행현황	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6. 05. 25.	통보일(고시일)	2026. 04. 09.	
HS Code	전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의견수렴 미진행	
총 수출액 (천불)	683,525,430 천불 (2025년 기준)	對別행국 수출액 (천불)	62,772,716 천불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합 관리하여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도 기반 적합성 평가방식(방식 1~8), 전자 등록 및 적합표시(CR) 관리 체계를 규정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규제는 베트남 시장 접근 시 적용되는 적합성 선언·인증 절차 전반을 재구성하였음 對베트남 수출기업은 개별 품목의 QCVN 충족 여부뿐 아니라 선언 방식, 시험기관 자격, 적합표시, 디지털 등록 및 사후관리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별 QCVN 및 인증방식 차이로 시험·인증·문서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별 적용 기술규정(QCVN) 및 인증방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06년 「표준 및 기술규정법」, 2007년 「제품·상품 품질법」 및 2025년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제도를 재정비함
- 이에 따라 2026년 1월 제정된 시행령 22/2026/NĐ-CP 및 37/2026/NĐ-CP에 부합하도록 기존 적합성 선언·적합성 평가 체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적합성 평가 방식, 위험도 기반 인증원칙, 전자적 신고·등록, 적합표시 사용관리 등을 하나의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규제 요지

-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제품·상품·서비스 등이 베트남 표준(TCVN) 또는 기술규정(QCVN)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고, 어떤 절차로 신고·등록해야 하는지를 새로 규정함
- 기업은 자사 제품이 단순히 권장 표준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언*하면 되는 대상인지, 또는 국가기술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험·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을 거쳐야 하는 대상인지 구분해야 함
 - * 표준 적합성 선언(hợp chuẩn): 기업이 해당 표준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입증하는 방식
 -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hợp quy):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품질 기준 충족을 전제하며 시험결과, 인증서 또는 자가평가보고서를 갖춘 뒤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함
- 적합성 선언을 완료한 이후에도 제품 라벨 또는 포장에 적합표시 부착 및 관련 기술문서와 시험성적서 보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품 사양 또는 신고 내용이 바뀌면 재선언이 필요하여 사후관리 체계까지 규정함

□ 적용대상

○ 전 제품

- 베트남 표준 또는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 전반에 적용됨

□ 시행일

○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

- 기존에 적합성 평가, 적합성 선언, 적합표시를 이미 완료한 기업은 기존 인증서 및 표시를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2

규제 세부 내용

□ 비교

구분	종전 제도(28/2012/TT-BKHCHN 등)	신규 규정(14/2026/TT-BKHCHN)
법체계	28/2012/TT-BKHCHN, 02/2017/TT-BKHCHN, 04/2025/TT-BKHCHN 등 다수 규정 병행	14/2026/TT-BKHCHN로 통합 정비
신고 방식	지방 전문기관 중심의 신고·접수 체계 운영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자 신고·등록체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스템 장애 시 지방기관 제출 허용
적합성 선언 구분	표준 적합성 선언(hợp chuẩn)과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hợp quy) 구분 운영	동일 구분 유지하되 절차·근거문서·전자등록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인증 방식	국제 적합성평가 체계(ISO/IEC Guide 67 기반)와 유사한 8개 적합성평가 방식 운영	8개 인증 방식 및 위험도별 적용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고위험 제품에는 방식 1, 방식 6 적용이 제한됨
인증 유효기간	방식 2, 3, 5, 6 기반 인증은 일반적으로 최대 3년 운영	방식 2·3·5·6 기반 인증의 최대 유효기간을 5년까지 확대하고 정기 감독평가 요구를 유지* *품목별 QCVN 및 적용 인증방식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적합표시 관리	적합표시 사용 중심	적합표시 사용요건, 연간 사용현황 보고, 전자라벨 표시, 다중 기술규정 적용 시 사용 조건 명시
경과조치	종전 규정 적용	기존 인증서 및 적합표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인정하며 재등록 의무 면제

□ 규제 내용 요약표

조항	포함 조문	주요 내용(요약)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적합성 평가 방법 전반 - 적용대상: 제품·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공정,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 포함 - 표준 적합성 마크와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의 사용 조건을 구분 - 적합성 인증 8개 방식 규정 - 제품 위험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인증방식을 제한하며 고위험 제품에는 방식 1 및 방식 6 적용 제한

제2장 표준 적합성 선언	제7조~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적합성 선언(hợp chuẩn)을 자율 제도로 규정 - 등록·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표준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음 -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자 통지를 기본 절차로 규정 - 자가평가 서류, 시험결과, 제품설명자료 보관 의무 규정 - 표준 내용 또는 제품 특성 변경 시 재선언 의무를 부과
제3장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제11조~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hợp quy)을 의무 제도로 규정 - 지정·공인 인증기관 또는 지정·공인 시험기관 결과를 근거로 등록 - 등록서, 인증서 또는 자가평가보고서, 시험 결과 제출이 필요함 - 등록 후 적합표시 사용의무를 부과함 - 사후관리로 정기 감시, 부적합 시 시정조치, 보관문서 유지 의무를 규정함
제4장 집행·전환조치	제15조~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부와 각 부처·지방정부의 관리 책임을 배분 -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종전 고시를 명시 - 기존 인증서와 적합표시는 유효기간 만료 시 까지 인정 - 이행주체인 중앙부처, 지방정부, 국가표준계량 품질위원회의 집행 책임을 규정
부속서 I	부속서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정 적합표시(CR) 도안 및 기본 비율과 치수 명시
부속서 II	부속서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시료 시험, 생산공정 평가, 관리시스템 평가, 시장감시, 로트시험, 전수시험 등 8개 방식 및 각 방식의 적용 순서와 판단 기준을 제시
부속서 III	부속서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적합성 선언 통지서 양식
부속서 IV	부속서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서 양식
부속서 V	부속서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평가 보고서 양식

□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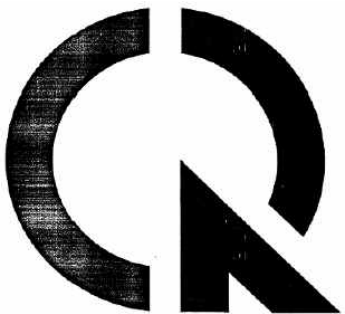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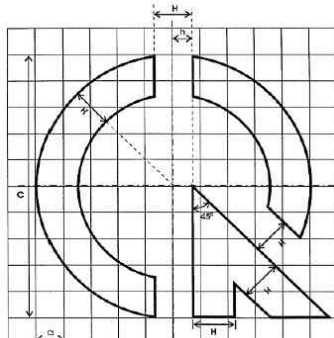
○ 적용범위 및 기본 정의 체계 (제1조~제3조)

- 본 시행규칙은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표준·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방법 전반에 적용됨
- 적용대상은 제품·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공정,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제품군(group)의 정의는 동일한 기술적 특성과 사용 목적을 가진 복수 제품을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차이가 있더라도 적용 기술요건 적합성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함

○ 적합표시 및 표시방식 규정 (제4조, 부속서 I)

- 표준 적합성 마크는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다른 마크와 혼동되지 않아야 하고 적용 표준번호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기업이 자가평가만으로 표준 적합성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 적합성 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 선언과 제3자 인증 결과를 시각적으로 구분함
-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부속서 I에서 형상과 기본 치수를 직접 제시하고 있으며, 제품 본체뿐 아니라 포장, 기술문서, 제품 라벨, 전자 라벨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쉽게 지워지지 않고 다시 떼어 붙일 수 없어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와 위치를 유지해야 하고, 여러 기술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사용 가능함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의 형상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 치수

○ 적합성 인증방식 8종의 운영 논리 (제5조, 부속서 II)

- 본 규정은 적합성 인증 자체를 단순히 시험 1회로 보지 않고, 제품 위험도와 유통단계에 맞춰 시험, 생산공정 평가, 관리시스템 평가, 시장감시를 조합하는 8개 방식으로 체계화함
- 방식 1은 대표 시료 시험을 통해 제품 유형 또는 종류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인증 효력은 시험을 위해 채취한 대표 시료가 대표하는 제품 유형 또는 종류에 대해 인정됨

- 방식 2는 대표 시료 시험 후 시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추가 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장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유지 여부를 감독 대상으로 포함함
- 방식 3은 대표 시료 시험과 생산공정 평가를 함께 수행하며 감독 시에는 생산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생산공정의 지속 적합성을 평가함
- 방식 4는 대표 시료 시험과 생산공정 평가를 수행한다는 점은 방식 3과 동일하며, 감독 시 시료를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방식 5는 대표 시료 시험과 함께 생산공정 또는 관리시스템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생산공정뿐 아니라 품질관리체계 자체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할 수 있음
- 방식 6은 제품 시험 중심 방식이 아니라 관리시스템 자체의 적합성을 평가·감독하는 방식으로, 공정·서비스·환경 등 관리시스템 기반 대상에 적용됨
- 방식 7은 동일 로트 제품을 대상으로 무작위 시료를 채취하여 로트 단위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인증 결과는 해당 로트에만 적용됨
- 방식 8은 전 제품에 대한 시험 또는 감정을 통해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유통·사용 전 안전 요구가 엄격한 제품에 적용됨

○ 위험도 기반 적용원칙 (제6조)

- 제품 위험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인증 방식을 제한하며, 고위험 제품에는 방식 1 및 방식 6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지방정부는 개별 기술규정에서 인증 방식, 시료 채취방식, 시험 항목 감면 여부 등을 규정할 수 있음
- 방식 2~5가 적용되는 고위험 제품·상품은 인증서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감독평가를 받아야 하며, 후속 감독 평가도 직전 감독평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중위험 또는 고위험 제품이라도 ISO 9001, HACCP, GMP 등 관련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인증기관이 국제 또는 지역 MRA/MLA 인정체계에 속해 있으면 감시 시료 수나 시험 항목 감경이 가능함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유효기간은 감면 검토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인증 범위가 해당 제품과 일치해야 함

○ 표준 적합성 선언 제도 (제7조~제10조)

- 표준 적합성 선언은 자율적 활동으로 규정되며, 기업은 등록·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실시한 자가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언할 수 있음
- 자체 평가 방식의 경우에도 시험은 등록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선언자는 제품 설명, 시험방법 및 결과, 비교자료, 생산공정, 품질관리 정보 등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이 필요함
- 신고 절차는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자 통지가 원칙이며, 시스템 장애 시에만 지방 전문기관 또는 지정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이 허용됨
- 표준 내용, 신고 내용 또는 제품 기능·용도·특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선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제도 (제11조~제14조)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은 의무적 활동으로 규정되며 국가기술규정 또는 지방기술규정 적용대상 제품은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절차를 거쳐야 함
- 기업은 지정 또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정·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자체 평가 후 등록하는 방식도 허용됨
- 국제·지역·외국 적합성 평가결과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활용 가능

- 등록 시에는 적합성 선언 등록서와 함께 인증서 사본 또는 자가평가 보고서, 시험 결과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적합표시 사용, 품질관리 유지, 정기감시, 부적합 시 시정조치 의무가 부과됨

○ 문서 보관 및 변경관리 (제10조, 제14조)

- 자체 평가 서류에는 제품의 기능, 용도, 기본 기술 사양, 설계자료, 사진, 라벨, 포장, 시험 방법, 시험 결과, 비교평가 결과, 품질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의 경우 품질관리 계획, 감독 주기, 시험 방법 및 유지관리 조치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보관해야 함
- 국가 관할 기관의 요청 시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표준·기술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표준·기술규정 내용, 신고 내용 또는 제품 기능·용도·특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선언 또는 재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리기관 책임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제15조)

- 과학기술부는 적합성 평가,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활동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지침 제공 역할을 수행함
- 과학기술부는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부처·지방정부 간 데이터 공유·조정 역할을 담당함
-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지방정부는 분야별 기술규정에 대한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운영 및 접수기관 지정 책임을 가짐
- 개별 부처 및 지방정부는 제품 위험도에 따라 인증방식 및 관리 조치를 구체화할 수 있음

○ 기존 규정 폐지 및 제도 통합 (제16조)

- 본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기존 시행규칙 28/2012/TT-BKHCN, 02/2017/TT-BKHCN, 04/2025/TT-BKHCN, 06/2020/TT-BKHCN, 07/2024/TT-BKHCN의 일부 조항을 폐지함

< (참고) 관련 조항 >

- 28/2012/TT-BKHCN: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표준·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방법을 규정한 기본 시행규칙
 - 02/2017/TT-BKHCN: 시행규칙 28/2012/TT-BKHCN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적합성 선언 절차, 서류 및 운영체계를 보완한 규정
 - 04/2025/TT-BKHCN: 시행규칙 28/2012/TT-BKHCN의 일부 조항을 추가 개정한 규정으로, 기존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평가 체계 일부를 수정·보완한 규정
 - 06/2020/TT-BKHCN: 제품·상품 품질 및 표준·기술규정 관리 관련 정부 시행령*의 일부 시행 조치를 규정한 시행규칙으로, 적합성 선언 및 국가 품질관리 절차 관련 일부 조항(제3조 제8항, 제19조 제4항)이 폐지됨
- *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음
- 시행령 132/2008/ND-CP: 「제품·상품 품질법」 시행 세부규정
 - 시행령 74/2018/ND-CP: 시행령 132/2008/ND-CP 일부 개정 규정
 - 시행령 154/2018/ND-CP: 투자·사업조건 간소화 및 국가관리 범위 조정 관련 개정 규정
 - 시행령 119/2017/ND-CP: 표준·측정·품질 및 제품·상품 품질 분야 행정위반 처분 규정
- 07/2024/TT-BKHCN: 국가표준계량품질위원회 관련 과학기술부 법규 일부 조항 개정 규정으로,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평가 관련 일부 조항(제15조, 제30조)이 폐지됨

- 일부 후속 개정 시행규칙 및 관련 조항도 함께 폐지하여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평가 규정을 단일 체계로 통합함
- 시행일은 2026년 5월 25일임

○ 경과조치 규정 (제17조)

-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인증 결과는 기존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 인정됨
- 기존 적합성 인증서, 표준 적합성 마크 및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재등록 또는 재신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시행 책임 규정 (제18조)

- 중앙부처, 부처급 기관 및 지방정부는 시행규칙 집행 책임을 부담함
- 국가표준계량품질위원회는 시행규칙의 이행 지침 및 운영 지원 역할을 수행함
-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개선 필요사항은 과학기술부에 보고하여 개정 검토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인증절차

○ 표준 적합성 선언

- 등록·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또는 기업의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언할 수 있음
- 선언 후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자 통지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 지정·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또는 지정·인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기초로 자체평가 후 등록할 수 있음
-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을 수행하고 인증서 또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베트남과학기술부(MOST) 및 국가표준계량품질위원회(STAMEQ)이 운영하는 전자 신고·등록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를 통해 적합성 선언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MOST: <https://english.mst.gov.vn> / STAMEQ: <https://tcvn.gov.vn>). 과학기술부는 관련 데이터의 조정·공유를 담당하며, 국가표준계량품질위원회는 시스템 운영 및 시행 안내를 주관함

□ 인증유지요건

- (인증 유효기간) 본 규정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기존 인증서 및 적합표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인정됨
- 방식 2~6은 원칙적으로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방식 1, 7, 8은 1회성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인증 효력이 각각 제품 유형 및 종류, 해당 로트, 개별 제품이나 상품에 한정됨
- (인증 비용) 품목별 시험, 인증, 감독평가, 등록 및 문서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서류 보존기간) 시험결과, 제품설명자료, 자가평가자료 및 품질 관리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나 규정상 일률적 보존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제품 기능, 용도, 특성 또는 신고 내용 변경 시 재선언 또는 재등록이 요구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시험, 감독평가 또는 문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적합성 선언 이후 지속적 적합성 유지 의무 부과
 - 품질관리, 시험 및 감독평가 요구사항을 유지해야 함
 - 부적합 발생 시 「제품·상품 품질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 적용 가능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대상 제품은 적합표시 사용관리 및 연례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적용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요건 확인 필요
 - 적용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국가표준 및 국가기술규정을 사전에 확인
 - 시험·인증기관이 베트남의 지정 또는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MRA/MLA 또는 베트남 인정체계에 따른 해외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가능 여부는 품목별 규정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제품 기능, 용도, 특성 또는 신고, 등록 내용 변경 시 재선언 또는 재등록이 요구될 수 있음
- (위반 시 제재) 허위 신고, 부적합 제품 유통 또는 적합표시 오사용 시 「제품·상품 품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및 제재가 가능하며, 감독기관이 시정조치, 제품 회수, 기타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적합성 평가기관

○ 인증기관

-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은 MOST에 등록·지정·인정된 인증기관 또는 품목별 전문부처 지정기관을 통해 수행됨
-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는 QUACERT, QUATEST 1·2·3 등이 있으며, 품목별 국가기술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기관이 달라질 수 있음

○ 시험기관

- 적합성 평가 시험은 MOST 등록·지정·인정된 시험기관 또는 품목별 지정 시험기관에서 수행될 수 있음
- QUATEST 1·2·3 등은 대표적인 국가 품질시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 시험범위는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해외 적합성평가 결과는 관련 규정 및 상호인정체계에 따라 활용될 수 있으며, 해외 시험성적서의 인정 여부는 품목별 QCVN, 지정·인정 시험기관 요건 및 베트남 인정체계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함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미국

- (현행 규정) 연방 차원의 단일 적합표시 제도 대신 분야별 적합성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군 및 규제기관에 따라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시험, 검사, 인증, 공장심사 등의 방식이 적용됨
 - * 공급자 적합성 선언 제도로, 제조자·공급자가 자체적으로 규정 적합성을 선언하는 방식
- (도입동향)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연방 적합성 평가 활동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NVCASE* 및 NVLAP* 등을 통해 시험 기관·인증기관 인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 NVCASE(National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Evaluation): 미국의 자발적 적합성평가 시스템 평가 프로그램
 - *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시험·교정기관 인정 프로그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FCC, OSHA, FDA, CPSC 등 분야별 규제기관이 개별 적합성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도와 제품 특성에 따라 시험·인증·적합성 선언 방식이 병행됨

2

일본

- (현행 규정) JIS 마크 제도를 통해 등록 인증기관이 일본산업규격(JIS) 적합 여부를 평가하며, 전기용품·소비제품 등 지정 품목은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기술기준 적합 확인, 자가검사 또는 제3자 인증이 요구될 수 있음
- (도입동향) 경제산업성(METI)은 PSE, PSC 등 제품안전 표시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품목 및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임의 표준 적합성 표시(JIS)와 법령상 의무 안전표시가 병행 운영된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유사함

3

중국

- (현행 규정) CCC 대상 품목에 대해 형식시험, 공장심사 및 사후 감독을 포함한 강제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CCC 인증 및 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시장 유통이 가능함
- (도입동향)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 위원회(CNCA)는 CCC 대상 품목 및 인증 규칙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위험도 기반 인증, 적합표시, 사후감독 체계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베트남 제도와 유사성이 있으나, 중국은 중앙집중형 강제인증 체계를 보다 강하게 운영하고 있음

4

EU

- (현행 규정) 제품별 조화입법 체계에 따라 제조자가 적합성평가 및 EU 적합성 선언을 수행하고 CE 마킹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고위험 제품은 공인 적합성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됨
- (도입동향) 제품별 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 모듈(Module A~H)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감시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유사 제도 도입동향) 제조자 책임, 기술문서 보관, 적합성 선언 및 적합표시 운영 구조는 베트남 규정과 유사성이 있으나, EU는 제품 군별 조화입법과 통합 시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음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베트남	미국 ¹⁾	일본 ²⁾	중국 ³⁾	EU ⁴⁾
상위 법·프레임	「표준·기술규정법」, 「제품·상품 품질법」, 14/2026/TT-BKHCHN	연방·주·기관별 분산 체계	JIS 및 제품안전 법령 병행	CCC 중심 강제인증 체계	제품별 조화입법 및 CE 체계
표준 적합성 제도	자율(hợp chuẩn)	분야별 자율·의무 혼합	JIS 임의 표시	자율표준 존재	자율표준 활용 가능
기술규정 적합성 제도	의무(hợp quy)	분야별 규제기관 중심	지정 품목 중심 의무	CCC 대상 품목 의무	제품법령별 의무
적합성 선언 주체	기업 또는 인증기관 평가 결과 기반	규제기관·제도별 상이	제조·수입자 중심	지정 인증기관 중심	제조사 중심
적합표시	CR 마크(hợp quy)	통합 국가 마크 없음	JIS, PSE, PSC 등	CCC 마크	CE 마킹
제3자 인증 필요성	위험도·품목별 상이	제도별 상이	지정 품목 중심 적용	CCC 대상 품목 원칙적 필요	일부 고위험 제품 필요
전자 등록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기관·제도별 상이	신고·기록 중심	인증기관·행정기관 관리	제품법령별 상이
사후관리	문서보관, 감독평가, 사용보고	기관별 시장감시	기록보관·표시관리	공장심사·사후감독	시장감시 중심
해외 결과 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적합성 평가결과 활용 가능	상호인정체계 일부 운영	제도·품목별 상이	제한적 운영	MRA 및 조화표준 활용

1) <https://www.nist.gov/standardsgov/national-voluntary-conformity-assessment-systems-evaluation-nvcase>,
<https://www.fcc.gov/engineering-technology/laboratory-division/general/equipment-authorization>, <https://www.osha.gov/nationally-recognized-testing-laboratory-program>
2) <https://www.jisc.go.jp/eng/jis-mark/newjis-eng.html>
3) <https://www.cnca.gov.cn/>
4)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goods/ce-marking_en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Declaration of Conformity, Certification of Conformity and Methods of Assessing Conformity with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관리기관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법적근거	표준·기술규정법, 제품·상품 품질법 및 관련 시행령
주요목적	①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절차 통합 운영 ② 제품 위험도 기반 적합성 평가체계 운영 ③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자 신고·등록 체계 구축 ④ 적합표시, 문서보관 및 사후관리 체계 운영

○ 주요 요구사항

구분	세부 내용
표준 적합성 선언	표준 적합성 선언은 자율 제도로 운영됨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국가기술규정 적용 대상 제품은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을 수행해야 함
적용 규격 식별	기업은 제품·상품에 적용되는 국가표준(TCVN) 및 국가기술규정(QCVN)을 식별해야 함
적합성 평가	제품 위험도 및 적용 기술규정에 따라 8개 적합성 인증방식(방식 1~8)이 적용될 수 있음
시험·인증 요구	지정 또는 인정된 인증기관·시험기관의 평가 결과 또는 자가평가 관련 근거문서를 확보해야 함
전자 등록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자 신고·등록 절차 수행 필요
적합표시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CR) 사용 대상 제품은 제품·포장·기술문서·라벨·전자라벨 등에 표시해야 함
사후관리	감독평가, 문서보관, 적합표시 사용관리 및 변경 시 재선언·재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인증 대응 부담	제품 위험도 및 기술규정별로 적용 인증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적합성평가 절차 검토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시험·문서 영향	시험결과, 자가평가 자료, 품질관리 정보 및 감독 관련 문서 보관 요구에 따라 문서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운영 절차 영향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자 등록 체계 운영에 따라 현지 수입자·대리인·인증기관과의 협업 절차 정비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음
표시 영향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CR) 표시 대상 제품은 라벨·전자라벨·포장 반영 및 사용관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사후관리 부담	감독평가, 제품 변경 시 재선언 또는 재등록 등 지속적 관리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공급망 영향	품목별 적용 기술규정,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요구사항이 달라 공급망 내 정보 연계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 비용 요인 정의

항목	내용	비용(가정값, USD)
규제 분석 및 인증 전략 수립	적용 국가기술통정(QCVN), 국가표준(TCVN), 적합성 인증방식(방식 1~8) 및 신고·등록 절차 분석	1,500
기술문서 작성	제품 설명자료, 설계자료, 시험자료, 자가평가 자료 및 적합성 선언 관련 문서 작성	2,000
제품 시험 비용	성능·안전·기술규정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수행 및 시험성적서 확보	5,000
인증 및 등록 비용	인증기관 대응, 적합성 선언 등록, 적합표시 관리 및 관련 행정 비용	3,000
품질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생산공정 관리, 품질관리 및 감독 대응 체계 구축 비용	4,000
사후관리 및 유지 비용	감독평가 대응, 문서보관, 재등록·재선언 대응 및 적합표시 관리 비용	2,500

* 본 비용은 예시적 가정값으로 품목별 QCVN, 시험항목, 인증기관, 수입자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시적 산정값임

- 기업 규모별 정량 시나리오

구분	연간 운영 물량(대)	연간 매출(USD)	초기비용 Co (USD)	단위당 비용 상승 Δc (USD/대)	연간 유지비용 Cy (USD)
중소기업	5,000	300,000	18,000	3.6	5,000 (≈1.00/대)
중견기업	20,000	1,500,000	15,000	0.75	6,500 (≈0.33/대)
대기업	50,000	4,000,000	12,000	0.24	9,000 (≈0.18/대)

※ (산출식) Co = 규제 분석 + 기술문서 작성 + 시험비용 + 인증·등록 비용 + 품질관리
구축 비용, Δc = Co÷연간물량, Cy = 감독평가 대응 + 문서관리 + 적합표시 관리
+ 재등록·재선언 대응 비용

⇒ (중소기업) 시험·문서작성·인증 대응을 외부기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초기 대응비용과 단위당 비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중견기업) 인증 대응 경험 및 물량 분산 효과로 단위당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일부 내부 품질관리 체계 활용이 가능함

⇒ (대기업) 기존 품질관리·시험 인프라 및 인증 대응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단위당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결론 및 권고 사항

- (결론) 베트남의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합 정비한 규정으로, 제품 위험도 기반 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자등록, 적합표시 관리 및 감독 평가 요구가 명문화됨에 따라 기업의 인증 및 문서관리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 제품별 적용 국가기술규정, 국가 표준 및 적합성 인증 방식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품 위험도에 따른 인증방식, 감독주기 및 사후관리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설계 및 생산 단계부터 시험·인증·적합표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증 대응 기간 및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품설명자료, 시험결과, 자가평가 자료 및 품질관리 문서 등 기술문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수입자,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확보하여 전자 등록, 감독평가 및 적합표시 관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본 규정은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제품 위험도에 따라 적합성 인증방식을 적용하는 제도로,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적합성 평가 및 표시 체계를 적용함
- 본 규정은 적용 적합성 평가방식을 8가지로 적용하며, 품목별 상이한 적용 QCVN, 전자등록 체계 등이 결합되어 수입자에게 복잡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5.1조 관점의 검토 필요
- 규정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자 신고·등록 절차, 기술문서 보관, 적합표시 및 감독평가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규정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TBT협정 제2.9조에 따라 사전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WTO 미통보로 접수되어 TBT 협정 사전통보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음
- TBT 협정 제2.12조는 기술규정 공포와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interval)’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최소 6개월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본 규정에서 제시한 유예기간 46일(4월 9일 공포 → 5월 25일 시행)은 6개월 기준에 크게

미달하며, 전 제품 대상 적합성평가 체계 전면 개편이라는 규제 범위를 고려하면 유예기간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본 규정은 적합성평가절차 전반을 재구성하는 규정으로, 협정 제 5.1조(적합성평가절차의 불필요한 무역장벽 금지) 및 제6조(상호 인정) 관련하여, 본 규제에서 해외 적합성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상호인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추가 검토 필요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위배 가능성 있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 46일로 매우 짧아 위배됨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추가 확인필요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기업	기본 인증 대응 및 문서관리	① QCVN 적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외부 시험·인증기관과 연계하여 대응 ②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및 적합표시 관련 자료를 기본 문서체계로 관리
중견기업	품목별 대응 절차 표준화	① 제품군별 적용 TCVN/QCVN 및 인증 절차를 표준화하여 관리 ②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감독평가 대응 절차를 내부 프로세스로 운영
대기업	통합 규제관리 체계 구축	① 인증서, 적합표시 및 재선언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② 설계·라벨 변경 시 적합성 선언 영향 여부를 점검하는 변경관리 체계를 운영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자료

○ 베트남 공식 관보

- <https://congbao.chinhphu.vn/van-ban/thong-tu-so-14-2026-tt-bkhcn-469393.htm>

○ 관련 법령

- 28/2012/TT-BKHCN: <https://vanban.chinhphu.vn/default.aspx?docid=166162&pageid=27160>
- 02/2017/TT-BKHCN: <https://vanban.chinhphu.vn/default.aspx?docid=190327&pageid=27160>
- 04/2025/TT-BKHCN: <https://vanban.chinhphu.vn/?classid=1&docid=213879&pageid=27160&typegroupid=6>
- 06/2020/TT-BKHCN: <https://congbao.chinhphu.vn/van-ban/thong-tu-so-06-2020-tt-bkhcn-33009.htm>
- 시행령 132/2008/ND-CP: <https://vanban.chinhphu.vn/?docid=82467&pageid=27160>
- 시행령 74/2018/ND-CP: <https://vanban.chinhphu.vn/default.aspx?docid=193720&pageid=27160>
- 시행령 154/2018/ND-CP: <https://vanban.chinhphu.vn/default.aspx?docid=195316&pageid=27160>
- 시행령 119/2017/ND-CP: <https://vanban.chinhphu.vn/?docid=191735&pageid=27160>
- 07/2024/TT-BKHCN: <https://vanban.chinhphu.vn/?classid=1&docid=211485&pageid=27160>

과학기술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14/2026/TT-BKHCN

하노이, 2026년 04월 09일

시행규칙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표준·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표준 기술규정법」 제68/2006/QH11호 (법 제35/2018/QH14호 및 법 제70/2025/QH15호에 의해 개정)

「제품 상품 품질법」 제05/2007/QH12호(법 제78/2025/QH15호에 의해 개정)

「표준 기술규정법」 시행을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한 세부 규정에 관한 2026년 01월 16일 자 정부의 시행령 제22/2026/ND-CP호

「제품 상품 품질법」 시행을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에 대한 세부 규정에 관한 2026년 01월 23일 자 정부의 시행령 제37/2026/ND-CP호

과학기술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2025년 03월 02일 자 정부 시행령 제55/2025/ND-CP호

국가표준계량품질위원회 원장의 제안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은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방법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이 시행규칙은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표준·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시행규칙은 적합성 평가,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활동과 관련된 단체, 개인 및 관리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이란 표준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 대상을 평가하여 해당 표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기관**이란 기술규정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 대상을 평가하여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제품·상품의 유형**이란 제조자의 코드, 명칭 또는 상업적 기호에 의해 식별되며 구체적인 사양의 집합으로 규정되는 특정한 제품·상품을 말한다.

4. **제품·상품의 종류**란 성질, 용도, 구성 성분, 기본 설계, 기술적 구조 및 작동 원리가 동일한 제품·상품 유형의 집합을 말한다. 일부 구체적인 사양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설계 특성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구사항 및 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상품 종류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5. **제품·상품군**이란 성질, 용도, 구성 성분, 기본 설계, 작동 원리 및 주요 사용 목적에서 유사성을 가진 하나 또는 여러 종류 및/또는 여러 유형으로 구성된 제품·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제품·상품군 내 제품·상품 간의 차이는 적용되는 기술 관련 요구사항 및 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제4조 표준 적합성 마크,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

1. 표준 적합성 마크 및 표준 적합성 마크의 사용

표준 적합성 인증 대상에 부여되는 표준 적합성 마크의 형상, 구조, 표시 방식 및 사용 방법은 인증기관이 규정하며, 다음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명확해야 하며 다른 마크와 혼동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b) 해당 표준의 번호 일체를 표시하거나 표준 적합성 인증의 근거로 사용된 표준 번호에 대한 정보 추적을 보장하는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표준 적합성 마크의 사용은 TCVN ISO/IEC 17030의 지침에 따른다. 단체·개인이 자체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표준 적합성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표준 적합성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2.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 및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의 사용

a)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본 시행규칙의 부록 I에 규정된 형상과 크기를 가지며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을 받은 대상에 사용된다.

b)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제품·상품에 직접 표시하거나 포장, 기술문서 또는 제품·상품 부착 라벨에 표시한다.

c)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떼어내어 다시 붙일 수 없어야 하며 잘 보이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d)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나 이 시행규칙 부록 I에 규정된 기본 비율과 크기를 유지해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d)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단일 색상으로 디자인·표시되어야 하며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e) 제품·상품이 서로 다른 여러 기술규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상품이 각각의 기술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g) 단체·개인이 제품의 전자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제품의 전자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항 제b호 및 제c호의 규정은 단체·개인이 전자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인증 방법

1. 적합성 인증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수행한다.

a) 방법 1: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을 통한 인증.

b) 방법 2: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을 통한 인증. 시장 내에서 채취한 시료의 시험을 통한 감독.

c) 방법 3: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한 인증.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한 감독. 이때,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에서 채취한다.

d) 방법 4: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한 인증.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한 감독.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하거나 생산장소와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d) 방법 5: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 및 생산 과정 또는 관리시스템 평가를 통한 인증.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또는 관리시스템 평가를 통한 감독.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하거나 생산장소와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e) 방법 6: 관리시스템의 평가 및 감독을 통한 인증.

g) 방법 7: 제품·상품의 로트 시험 및 평가를 통한 인증.

h) 방법 8: 전체 제품·상품에 대한 시험 또는 감정에 의한 인증.

2. 적합성 인증 방법의 내용, 절차 및 사용 원칙은 이 시행규칙 부록 II에 규정한다.

3.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인증기관은 상기 방법 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TCVN ISO/IEC 17067 표준 및 국제 관행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적합성 인증 방법의 적용 원칙

1.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 방법은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을 규율하는 해당 기술규정 또는 관련 전문 법규 문서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인증은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는 제품·상품의 위험 수준에 근거하여 해당 기술규정에서 인증 방법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이 시행규칙 제5조 및 부록 II에 규정된 방법 1, 방법 6은 위험 수준이 높은 제품·상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상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하고 해당 기술규정의 하나 또는 일부 지표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제품·상품의 특성이 유통·분배 과정에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한다.

5.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 시험을 요구하는 인증 방법은 제품·상품의 유형별 시료 채취 대신 제품·상품 종류별 대표 시료 채취를 허용하거나 제품·상품의 각 유형, 종류별 시료 채취 대신 제품·상품군별 대표 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가 해당 기술규정 또는 관련 법규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위험 수준이 중간인 제품·상품에만 적용할 것

b) 해당 제품·상품에 적용되는 전문 법령이 제품·상품을 최초로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해당 기술규정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술적 지표를 충분히 시험하도록 하는 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것

c) 단체·기업이 해당 제품·상품 대상과 관련된 인증 범위에 대해 해당 표준 (ISO 9001, HACCP,

GMP, 기타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이미 취득하였을 것 인증기관은 국제 또는 지역 인정협력기구의 상호인정협정/약정 (MRA/MLA)을 체결한 회원인 인정기관 (국제 시험기관 인정 기구 (ILAC) 및 국제 인정 포럼 (IAF)가 통합된 기관인 국제인정협력체 (Global Accreditation Cooperation Incorporated),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 (APAC)) 또는 베트남이 참여하는 상호인정협정 (MRA/MLA)에 따라 공인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6. 위험 수준이 중간 또는 높은 제품·상품에 대해 감독 시 시험 시료 채취를 요구하는 인증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성·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술규정에서 시험 시료 수의 면제·감경 또는 시험 항목의 면제·감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항에 따른 시험 시료 수의 면제·감경 또는 시험 항목의 면제·감경은 감독 평가 각 회차에서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a) 단체·기업이 해당 표준 (ISO 9001, HACCP, GMP, 기타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 중이며 인증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제공할 것 인증기관은 국제 또는 지역 인정협력기구의 상호인정협정/약정 (MRA/MLA)을 체결한 회원인 인정기관 (국제인정협력체 (Global Accreditation Cooperation Incorporated),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 (APAC)) 또는 베트남이 참여하는 상호인정협정 (MRA/MLA)에 따라 공인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b) 이 조 제7항에 규정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에는 단체·기업이 시험 면제·감경 대상 제품·상품에 대해 내부 감독 및 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단체·기업이 관련 당사자(고객, 관리기관, 기타 관련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시험 면제·감경 대상 제품·상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c) 이 항 제b호에 규정된 시험 결과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d) 해당 기술규정에 규정된 제품·상품의 지표는 인증 주기마다 1회 이상 감독 시험을 받아야 한다.

7. 위험 수준이 중간 또는 높은 제품·상품에 대해 감독 시 생산 과정 평가를 요구하는 인증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성·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기술규정에서 생산과정 평가 요구사항의 면제·감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항의 규정은 단체·기업이 해당 표준(ISO 9001, HACCP, GMP, 기타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 중이며 인증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8. 이 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해당 표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면제·감경 조치를 검토하는 시점에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b) 인증 범위가 해당 기술규정에 규정된 제품·상품 대상과 부합할 것

c) 국제 또는 지역 인정협력기구의 상호인정협정/약정 (MRA/MLA)을 체결한 회원인 인정기관 (국제인정협력체 (Global Accreditation Cooperation Incorporated),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 (APAC)) 또는 베트남이 참여하는 상호인정협정 (MRA/MLA)에 따라 공인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될 것

9. 방법 7을 적용하여 제품·상품 로트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성·시 인민위원회는 제품·상품의 위험 수준 및 기술적 특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술규정에서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 제품·상품군을 대표하는 시료 채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기술규정에서 제품·상품 로트의 대표 시료 채취를 통계적 확률 원칙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은 해당 로트의 확률적 시료 채취에 관한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TCVN 9597-1 또는 ISO 10576-1, TCVN 7790 표준군 또는 ISO 2859 표준군, TCVN 8243-1 또는 ISO 3951-1)에 따른 시료 채취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0. 표준 적합성 인증 방법은 특정한 경제·사회 활동에서 각 제품·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대상에 대해 적용되며 이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방법에 따라 표준 적합성 인증기관 또는 표준 적합성을 선언하는 단체·개인이 선택한다. 선택된 인증 방법은 평가 대상의 위험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인증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표준 적합성 인증 활동에서 이 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 여부는 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이 결정한다. 표준 적합성 인증서는 인증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방법 1을 적용한 표준 적합성 인증에 대해서는 표준 적합성 인증 마크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2장

표준 적합성 선언

제7조 표준 적합성 선언의 원칙

1. 표준 적합성 선언의 대상은 해당 표준에 규정된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이다.

표준 적합성 선언은 자발적 활동이다.

2. 해당 표준 적합성 선언은 다음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a) 등록 또는 공인된 인증기관이 수행한 표준 적합성 인증 결과, 또는

b) 표준 적합을 선언하는 단체·개인의 자체 적합성 평가 결과

표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은 등록 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제8조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1.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이 해당 표준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은 표준 적합성 평가라고 한다.

a) 표준 적합성 평가는 등록·공인된 인증기관 또는 표준 적합성을 선언하는 단체·개인이 수행한다.

b) 표준 적합성 인증은 이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적합성 인증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2. 이 조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표준 적합성 평가 결과는 단체·개인이 표준 적합을 선언하는 데 근거가 된다.

제9조 표준 적합성 선언 절차

표준 적합성 선언은 다음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1. 1단계: 단체·개인은 이 시행규칙 부록 III의 양식에 따라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서에 정보를 기입한다.

단체·개인은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서에서 자신의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에 적용할 표준을 선택하고 열거할 권리가 있다.

단체·개인은 자신이 책임지는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에 대해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서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2. 2단계: 단체·개인은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합성 선언 통보를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적합성 선언 통보 완료를 확인하는 인증 번호를 부여받는다.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있거나 인프라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개인은 지방 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서를 제출한다. 지방 전문기관은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를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 지방에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분야별 관리부처 산하 기관 중 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임한 기관이 단체·개인의 표준 적합성 선언 서류를 접수한다.

제10조 표준 적합성 선언 단체·개인의 책임

1. 표준 적합성 선언 대상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2. 표준 적합성 선언을 한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단체·개인의 생산·경영 시설에서 품질 관리, 시험 및 정기적 감독을 유지해야 한다.

3. 표준 적합성 선언 단체·개인은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이 표준 적합성 선언 이후 유통 또는 사용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발견된 경우 「제품·상품 품질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4. 표준 적합성 선언 서류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보관한다.

a) 인증기관의 표준 적합성 인증 결과에 근거하여 표준 적합성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단체·개인은 표준 적합성 인증서 원본, 표준 적합성 인증기관이 수행한 인증 서류,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서 및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정보 등을 포함하는 표준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다.

b) 생산·영업을 수행하는 단체·개인의 자체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표준 적합성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단체·개인은 단체·개인의 자체 평가 서류 원본,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서 및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정보 등을 포함하는 표준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다.

c) 단체·개인의 자체 평가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의에 대한 일반적 설명 (기능, 용도, 구조, 기본 기술규정, 설계자료, 도면, 사진, 라벨, 포장 등), 원재료, 기술, 품질관리시스템 (적용하는 경우) 정보를 포함한 생산과정·절차

- 시험 방법, 시험 결과에 관한 정보,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의 비교 결과

-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타 관련 자료

- 권한 있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서명으로 확인된 단체·개인의 자체 평가 보고서

5. 국가 관할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이 해당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 통보한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표준 적합성 선언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표준 적합성 선언을 한 제품, 상품, 서비스의 기능·용도·특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선언을 해야 한다.

제3장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제11조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의 원칙

1.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의 대상은 관련 부처가 제정한 국가기술규정 또는 성·시·인민위원회가 제정한 지방기술규정에 규정된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으로 한다.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은 의무적 활동이다.

2.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은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의 위험도 수준에 따라 다음을 바탕으로 수행한다.

a)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 결과

- b)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된 인증기관의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 결과
 - c)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되거나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단체·개인이 수행한 자체 평가 결과
 - d)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국제·지역·외국 기관의 적합성 평가결과
3. 「표준·기술규정법」의 개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이 면제되는 제품·상품은 관련 전문 법령에 따른 품질 및 안전 관리상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제12조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

1.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이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라고 한다.

a)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는 제품·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위험 수준 및 품질 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인증기관 또는 단체·개인이 수행한다.

b)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의 경우, 인증 활동은 본 시행규칙 제6조 및 부록 II에 따라 수행된다.

2. 이 조 제1항 제a호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결과는 단체·개인이 기술규정 적합성을 선언하는데 근거가 된다.

제13조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절차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은 다음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1. 1단계: 단체·개인은 이 시행규칙 부록 IV의 서식에 따라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서에 정보를 기입한다.

단체·개인은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서에서 자신의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규정을 파악하고 성실하게 열거해야 한다.

단체·개인은 자신이 책임지는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에 대해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서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2. 2단계: 단체·개인은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 완료 확인 번호를 부여받는다.

첨부서류:

- 인증기관의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규정 적합성을 선언하는 경우 단체·개인에게 발급된 해당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서의 전자본

- 단체·개인의 자체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규정 적합성을 선언하는 경우 지정되었거나 해당 기술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기술규정 적합 시험 결과 전자본과 함께 제출되는 기술규정 적합성 자체평가 보고서(본 시행규칙 부록 V 양식에 따름)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있거나 인프라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개인은 지방 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을 수행한다. 지방 전문기관은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을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 지방에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부처급 기관장이 해당 분야의 관리를 지정하거나 책임을 부여한 부처 또는 부처급 기관 산하 기관은 단체·개인의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서류를 접수한다.

제14조 기술규정 적합성을 선언하는 단체·개인의 책임

1. 자신의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내용을 적절한 정보 매체에 공지하여 제품·상품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을 한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품질관리, 시험 및 정기적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이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이 완료된 제품·상품에 대해 시장 유통 전에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매년 인증기관에 그 사용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4.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단체·개인은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이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이후 유통 또는 사용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발견된 경우 「제품·상품 품질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서류는 국가관리기관의 점검·검사를 위한 근거로 다음과 같이 작성·보관한다.

a) 인증기관의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규정 적합성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단체·개인은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서 원본,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기관이 수행한 인증 서류,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서 및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정보 등을 포함하는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다.

b) 생산·영업을 수행하는 단체·개인의 자체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규정 적합성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단체·개인은 단체·개인의 자체 감독 평가 서류 원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서 및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에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정보 등을 포함하는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다.

c) 단체·개인의 자체 평가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에 대한 일반적 설명 (기능, 용도, 구조, 기본 기술규정, 설계자료, 도면, 사진, 라벨, 포장 등), 원재료, 기술, 품질관리시스템 (적용하는 경우) 정보를 포함한 생산과정·절차

- 시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해당 기술규정 요구사항과의 비교 내용, 그리고 법규에 따라 인정·지정·승인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사본

- 기술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 및 정기적 감독 계획: 검사·시험 주기, 방법, 기술규정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 해당 기술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타 관련 자료

- 확인 서명을 받은 단체·개인의 자체 평가서

6. 국가 관할당국이 요구할 경우 제품, 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이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7. 등록된 기술규정,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을 한 제품, 상품, 서비스의 기능·용도·특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선언을 해야 한다.

제4장 수행 전개

제15조 관리기관의 책임

1. 과학기술부의 책임:

a) 정부가 적합성 평가,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b)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가 제정한 해당 기술규정에서 제품·상품의 위험 수준과 적절한 관리 조치를 결정하도록 협력·지도하며, 「표준·기술규정법」에 규정된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원칙에 따른다.

c) 할당된 국가 관리 분야에서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신청서 접수 기관을 지정한다.

d) 이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의 이행을 촉진·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와 협력한다.

d) 과학기술부,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의 관리 책임에 속하는 제품·상품, 서비스, 공정, 환경 또는 기타 경제·사회 활동 대상에 대한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상황을 추적하며 적합성 평가 활동,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에 관한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의 지정 사항을 추적한다.

e) 취합, 보고, 점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계량·품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에 조정·공유한다.

2.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a) 해당 기술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함에 있어서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활동을 운영한다.

b) 할당된 해당 국가 관리 분야에서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신청서 접수 기관을 지정한다.

c)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가 제정한 해당 기술규정에서 제품·상품의 위험 수준과 적절한 관리 조치를 결정하며 「표준·기술규정법」에 규정된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원칙에 따른다.

d)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성·시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의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 활동을 관리·추적한다.

d)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및 성·시 인민위원회에서의 표준 적합성 선언 및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활동 관리 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와 협력한다.

제16조 시행 조항

1. 이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다음과 같은 시행규칙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에 관한 2012년 12월 12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28/2012/TT-BKHCHN호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

-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에 관한 2012년 12월 12일 자 시행규칙 제28/2012/TT-BKHCHN호」의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2017년 3월 31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02/2017/TT-BKHCHN호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

- 정부의 2008년 12월 31일 자 시행령 제132/2008/ND-CP호, 2018년 5월 15일 자 시행령 제74/2018/ND-CP호, 2018년 11월 9일 자 시행령 제154/2018/ND-CP호, 2017년 11월 1일 자 시행령 제119/2017/ND-CP호의 일부 조항의 세부 규정 및 시행 조치에 관한 2020년 12월 10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06/2020/TT-BKHCH호의 제3조 제8항 및 제19조 제4항 폐지

- 국가표준계량품질위원회와 관련된 과학기술부 장관의 소관 법규문서의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2024년 10월 08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07/2024/TT-BKHCH호의 제15조 및 제30조 폐지

-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에 관한 2012년 12월 12일 자 시행규칙 제28/2012/TT-BKHCH호의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2025년 5월 31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04/2025/TT-BKHCH호 (2017년 3월 31일 자 시행규칙 02/2017/TT-BKHCH호에 의해 개정됨)

제17조 경과규정

1.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표준,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을 수행한 단체·개인은 해당 표준 적합성 인증서,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서, 표준 적합성 마크,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를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의 재통보 또는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의 재등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제18조 수행 전개

1. 장관, 부처급 기관장,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행규칙의 시행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2. 국가표준계량품질위원회 원장은 이 시행규칙의 안내 및 시행 주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3. 단체 및 개인은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검토 및 개정하도록 한다.

수신처:

- 정부총리, 부총리
- 부처·부처급 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 각 성·시 인민위원회 및 과학기술청
- 법무부 법령검토 및 집행조직국
- 관보, 정부 홈페이지
- 과학기술부: 장관, 차관, 산하기관 및 홈페이지
- 보관용: 문서과, 품질측정표준팀

장관



부하이꾸언

부록 I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의 형상 및 치수

(2026년 04월 09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14/2026/TT-BKHCN호 별자)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의 형상 및 치수

1.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는 그림 1에 설명된 형상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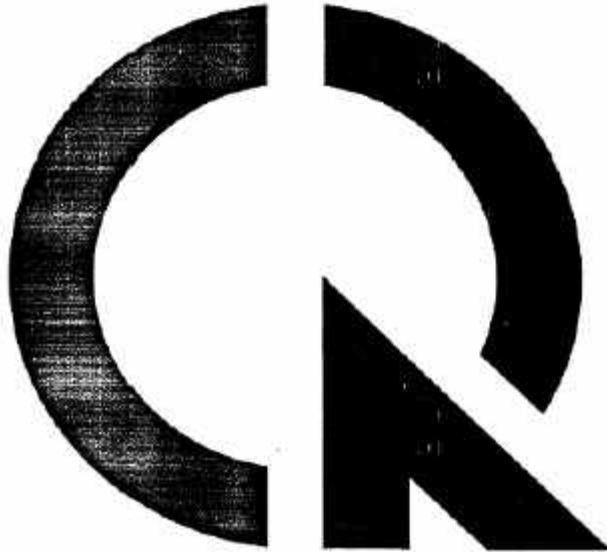


그림 1.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의 형상

2.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 치수는 그림 2에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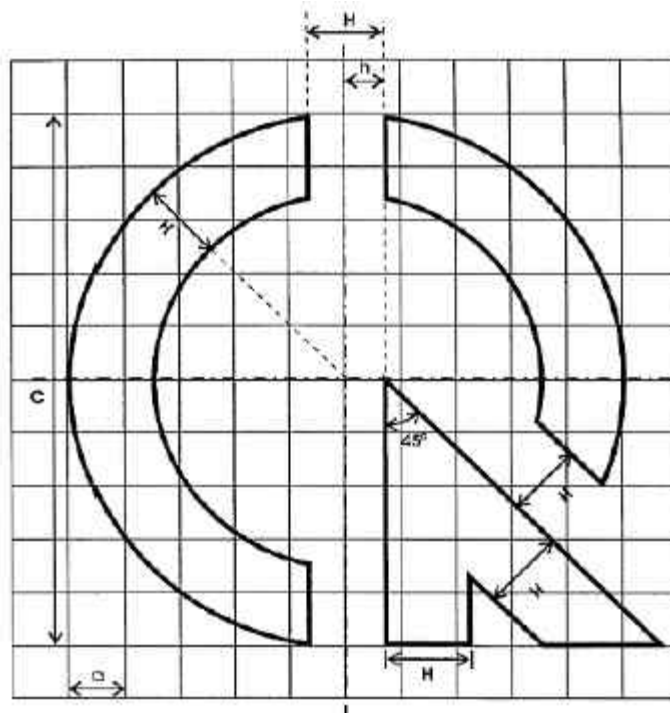


그림 2. 기술규정 적합성 마크의 기본 치수

비고:

$$H = 1.5a$$

$$h = 0.5H$$

$$C = 7.5H$$

부록 II

적합성 평가 방법의 내용, 절차 및 사용 원칙 인증 방법

(2026년 04월 09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14/2026/TT-BKHCN호 별지)

적합성 평가 방법의 내용, 절차 및 사용 원칙 인증 방법

I. 방법 1: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 시험을 통한 인증

방법 1은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 시험을 통해 적합성을 인증하는 방법이다. 적합성에 대한 인증은 시험을 위해 채취한 제품·상품의 형식 또는 종류에 대해 유효하다.

1. 방법 1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시료 채취: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결정한다.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를 채취한다.

시료의 제품·상품 단위 수량은 시험 및 보관에 충분하여야 한다.

1.2. 시료 시험:

a) 표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료 시험

표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료 시험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험 활동 분야를 등록한 시험기관 (제조자의 시험기관 포함)에서 수행된다. 인증기관은 인정받았거나 지정된 시험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b)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료 시험

기술규정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료 시험은 표준 및 기술규정에 관한 법령, 제품·상품 품질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었거나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수행된다.

c) 시험이 필요한 제품·상품의 특성과 시험 방법은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1.3. 결과 처리: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지표에 대한 시험 결과를 해당 표준, 기술규정의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1.4. 적합성 인증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는 시험 시료의 모든 지표가 해당 표준, 기술규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표준,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방법 1의 사용 원칙

방법 1은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의 적합성이 유형, 종류별 제품·상품의 설계에 기본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 표준, 기술규정에 대한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II. 방법 2: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을 통한 인증. 시장 내에서 채취한 시료의 시험을 통한 감독.

방법 2는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제품·상품의 적합성을 인증한다. 이후의 감독 평가는 시장에서 채취한 제품·상품 시료 시험을 통해 수행된다.

1. 방법 2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시료 채취:

방법 1의 제1.1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2. 시료 시험:

방법 1의 제1.2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3. 결과 처리: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각 지표에 대한 시험 결과를 해당 표준, 기술규정의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1.4. 적합성 인증

a)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는 시험 시료의 모든 지표가 해당 표준, 기술규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표준,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b) 제품·상품의 적합성에 대한 인증은 감독 평가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최대 5년의 효력 기간을 가진다.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인증기관은 제품·상품의 위험 수준, 기술적 특성, 안정성 수준, 기술 수준, 수명주기 및 사용 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검토·결정한다.

1.5. 감독:

a) 제품·상품은 적합성 인증의 효력 기간 내 시장에서 채취한 시료 시험을 통해 평가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 평가 시점은 다음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a1) 위험 수준이 높은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감독 평가 시점은 인증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음 감독 평가 시점은 이전 감독 평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a2) 위험 수준이 중간인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감독 평가 시점은 인증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음 감독 평가 시점은 이전 감독 평가 종료일로부터 24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a3) 위험 수준이 낮은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과 평가 대상 단체·기업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감독 평가 주기를 결정한다.

b) 제품·상품 시료 시험은 방법 1의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c) 감독 평가 결과는 적합성 인증을 유지,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로 사용된다.

2. 방법 2의 사용 원칙:

방법 2는 다음 조건에서 제품·상품의 적합성 인증에 사용된다.

a) 제품·상품이 안전·건강·환경 측면에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

b) 제품·상품의 설계가 형식·종류별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c) 제품·상품의 품질이 시장 유통 과정에서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

d) 제품·상품을 생산·경영하는 단체·개인이 감독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상품이 발견될 경우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

III. 방법 3: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한 인증.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한 감독. 이때,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에서 채취한다.

방법 3은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 시험 결과 및 생산 과정 평가에 근거하여 적합성을 인증한다. 감독 평가는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이때,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에서 채취한다.

1. 방법 3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시료 채취:

방법 1의 제1.1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2. 시험 시료의 적합성 평가

방법 1의 제1.2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3. 생산 과정의 적합성 평가:

생산 과정의 평가는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제조자가 설정한 관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품·상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관리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제품의 기술 문서 (설계도서, 제품의 기술 관련 요구사항)

b) 포장, 하역, 보관, 운송 과정을 포함하여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의 전체 생산 과정, 즉 투입 단계부터 중간 단계, 제품 형성까지의 전 과정

c)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품질

d) 기술 설비 및 계측·검사·시험 장비

d) 근로자 및 기술 인력의 수준과 역량

e) 기타 필요한 기술적 사항

1.4. 결과 처리:

-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각 지표에 대한 시험 결과를 해당 표준, 기술규정의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 이 방법의 제1.3호에서 규정한 요구사항과 생산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5. 적합성 인증:

a) 제품·상품의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품·상품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a1) 시험 시료의 모든 지표가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에서 규정한 수준에 적합할 것

a2) 생산 과정 평가 결과가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b) 제품·상품의 적합성에 대한 인증은 감독 평가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최대 5년의 효력 기간을 가진다.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인증기관은 제품·상품의 위험 수준, 기술적 특성, 안정성 수준, 기술 수준, 수명주기 및 사용 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검토·결정한다.

1.6. 감독:

a) 제품·상품은 적합성 인증의 효력 기간 내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해 평가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에서 채취한다. 감독 평가 시점은 다음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a1) 위험 수준이 높은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감독 평가 시점은 인증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음 감독 평가 시점은 이전 감독 평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a2) 위험 수준이 중간인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감독 평가 시점은 인증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음 감독 평가 시점은 이전 감독 평가 종료일로부터 24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a3) 위험 수준이 낮은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과 평가 대상 단체·기업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감독 평가 주기를 결정한다.

b) 제품·상품 시료 시험은 방법 1의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c) 감독 평가 결과는 적합성 인증을 유지,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로 사용된다.

2. 방법 3의 사용 원칙:

방법 3는 다음 조건에서 제품·상품의 적합성 평가에 사용된다.

a) 제품·상품이 방법 2로 평가되는 제품·상품보다 안전·건강·환경 측면에서 더 높은 위험을 가진 것

b) 제품·상품의 설계가 형식·종류별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c) 생산 과정에서 제품·상품의 품질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d) 제품·상품의 품질이 시장 유통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거나 거의 변하지 않을 것

d) 감독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상품이 발견되며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것

IV. 방법 4: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한 인증.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한 감독.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하거나 생산장소와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방법 4는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 시험 결과 및 생산 과정 평가에 근거하여 적합성을 인증한다. 감독 평가는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하거나 생산장소와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1. 방법 4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시료 채취:

방법 1의 제1.1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2. 시험 시료의 적합성 평가:

방법 1의 제1.2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3. 생산 과정의 적합성 평가:

방법 3의 제1.3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4. 결과 처리:

방법 3의 제1.4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5. 적합성 인증:

방법 3의 제1.5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6. 감독:

a) 제품·상품은 적합성 인증의 효력 기간 내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평가를 통해 평가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하거나 생산장소와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감독 평가 시점은 다음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a1) 위험 수준이 높은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감독 평가 시점은 인증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음 감독 평가 시점은 이전 감독 평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a2) 위험 수준이 중간인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감독 평가 시점은 인증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음 감독 평가 시점은 이전 감독 평가 종료일로부터 24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a3) 위험 수준이 낮은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과 평가 대상 단체·기업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감독 평가 주기를 결정한다.

b) 제품·상품 시료 시험은 방법 1의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c) 감독 평가 결과는 적합성 인증을 유지,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로 사용된다.

2. 방법 4의 사용 원칙:

방법 4는 다음 조건에서 제품·상품의 적합성 인증에 사용된다.

방법 5와 같은 높은 신뢰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 비용 절감을 위해 감독 방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할 것

b) 적합성 인정결과의 상호 인정 확립을 목표로 널리 적용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V. 방법 5: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시험 및 생산 과정 또는 관리시스템 평가를 통한 인증.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또는 관리시스템 평가를 통한 감독.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하거나 생산장소와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방법 5는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 시험 결과 및 생산 과정 또는 관리시스템 평가에 근거하여 적합성을 인증한다. 이후 감독 평가는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또는 관리시스템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하거나 생산장소와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1. 방법 5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시료 채취:

방법 1의 제1.1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2. 시험 시료의 적합성 평가:

방법 1의 제1.2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3. 생산 과정의 적합성 평가 또는 관리시스템 평가:

a) 생산 과정의 적합성 평가: 방법 3의 제1.3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b)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 문서시스템 (관리정책·목표, 관리시스템 매뉴얼 (있는 경우), 절차·지침·양식, 수행 사실 입증 서류)의 적합성 평가

- 시스템의 실행 및 운영 (정책 및 목표의 실제 적용, 프로세스 접근 방식 및 위험 기반 접근에 따른 프로세스 수행, 활동·자원·역량 및 인식의 통제) 평가

- 표준, 기술규정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관련 법적 요구사항, 기술규정, 표준의 식별 및 준수) 평가

- 내부 평가 활동 및 경영진 검토 평가(내부 평가: 계획·평가자 역량·결과 및 추적, 경영진 검토: 의지·개선 결정·자원 배분)

-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시정 조치 (부적합의 발견 및 분류, 원인 분석, 시정 조치 및 효과성 추적)

1.4. 결과 처리:

- 제품·상품의 유형, 종류를 대표하는 시료의 각 지표에 대한 시험 결과를 해당 표준, 기술규정의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 방법 3의 제1.3호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대비한 생산 과정의 적합성 또는 이 방법의 제1.3호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대비한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또는 양자를 모두 검토한다.

1.5. 적합성 인증

a) 제품·상품의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품·상품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a1) 시험 시료의 모든 지표가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에서 규정한 수준에 적합할 것

a2) 생산 과정 또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b) 제품·상품의 적합성에 대한 인증은 감독 평가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최대 5년의 효력 기간을 가진다.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인증기관은 제품·상품의 위험 수준, 기술적 특성, 안정성 수준, 기술 수준, 수명주기 및 사용 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검토·결정한다.

1.6. 감독:

a) 제품·상품은 적합성 인증의 효력 기간 내 시료 시험 및 생산 과정 또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 시의 시험 시료는 생산장소 또는 시장에서 채취하거나 생산장소와 시장 모두에서 채취할 수 있다. 감독 평가 시점은 다음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a1) 위험 수준이 높은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감독 평가 시점은 인증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음 감독 평가 시점은 이전 감독 평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a2) 위험 수준이 중간인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감독 평가 시점은 인증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음 감독 평가 시점은 이전 감독 평가 종료일로부터 24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a3) 위험 수준이 낮은 제품·상품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과 평가 대상 단체·기업 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감독 평가 주기를 결정한다.

b) 제품·상품 시료 시험은 방법 1의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c) 감독 평가 결과는 적합성 인증을 유지,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로 사용된다.

2. 방법 5의 사용 원칙:

방법 5는 다음 조건에서 제품·상품의 적합성 인증에 사용된다.

a) 제품·상품이 방법 4로 인증되는 제품·상품보다 안전·건강·환경 측면의 위험이 더 큰 것

b) 제품·상품의 설계가 형식·종류별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c) 생산 과정에서 제품·상품의 품질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d) 제품·상품의 품질이 생산 과정에서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시장 유통 과정에서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

d) 감독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상품이 발견될 경우 시장에서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보유하고 있을 것

VI. 방법 6: 관리시스템의 평가 및 감독을 통한 인증

방법 6은 관리시스템 평가를 근거로 관리시스템이 해당 표준·기술규정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인증하는 방법이다.

1. 방법 6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 관리시스템은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 평가 결과 보고는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의 규정과 대조하여 작성된다.

1.2. 적합성 인증:

평가 결과 보고를 근거로 관리시스템이 해당 표준·기술규정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인증한다.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인증은 감독 평가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최대 5년의 효력 기간을 가진다.

산업·분야별 관리 부처, 인증기관은 기술적 특성, 기술 수준 및 안정성, 관리시스템 운영의 범위 및 복잡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검토·결정한다.

1.3. 관리시스템 감독

- 감독은 관리시스템 평가를 통해 수행되며 감독 평가 주기는 12개월마다 1회 이상 또는 해당 표준, 기술규정에 규정된 구체적인 감독 기간을 따른다.
- 감독 결과는 관리시스템의 적합성을 유지, 정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2. 방법 6의 사용 원칙:

방법 6은 표준 및 기술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갖춘 공정, 서비스, 환경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VII. 방법 7: 제품·상품 로트의 시험 및 평가를 통한 인증

방법 7은 무작위로 채취된 제품·상품 시료의 시험 결과에 근거하며 로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제품·상품 로트의 적합성을 인증한다. 적합성 인증은 해당 특정 로트에만 유효하며 이후의 감독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1. 방법 7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시료 채취:

시험 시료는 무작위로 채취된 시료로서 로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시료의 수량은 시험 및 시료 보관을 위해 충분해야 한다.

1.2. 시험 시료의 적합성 평가:

방법 1의 제1.2호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3. 결과 처리:

시험 결과 결과를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의 규정과 비교하여 제품·상품의 특성을 검토한다.

1.4. 적합성 인증:

시험 시험 중 부적합 결과가 허용 한도 내에 있을 경우 로트 제품·상품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시험 시험 중 부적합 결과가 허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로트 제품·상품은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방법 7의 사용 원칙:

방법 7은 다음 조건에서 제품·상품의 적합성 인증에 사용된다.

a) 제품·상품이 동일한 로트로 구분될 것

b) 품질 안정성 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것

VIII. 방법 8: 전체 제품·상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에 의한 인증

방법 8은 유통·사용·운영 전에 제품·상품 전수에 대한 시험 또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적합성 여부를 인증하는 방법이다. 적합성 인증은 개별 제품·상품에만 유효하며 이후의 감독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1. 방법 8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 시험 또는 감정이 필요한 제품·상품을 식별한다.

1.2. 제품·상품의 적합성 평가:

a) 제품·상품에 대한 시험 또는 감정은 해당 활동을 등록한 역량 있는 시험기관 또는 감정기관에서 생산 현장, 설치 장소, 사용 장소 또는 시험기관·감정기관에서 수행한다.

인정된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의 사용을 권장한다.

b) 시험·감정이 필요한 제품·상품의 특성과 시험·감정 방법은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1.3. 결과 처리:

시험 결과 또는 감정 결과를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제품·상품의 특성을 검토한다.

1.4. 적합성 인증:

제품·상품이 시험 또는 감정을 통해 모든 지표가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에서 규정한 수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품·상품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방법 8의 사용 원칙:

방법 8은 유통·사용·운영 전에 안전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는 제품·상품의 적합성 인증에 사용된다.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서 양식

(2026년 04월 09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14/2026/TT-BKHCN호 별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표준 적합성 선언 통보서

번호.....

신청인명:

주소:

전화번호:.....팩스:

E-mail: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제품, 상품, 공정, 서비스,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 (명칭, 형식, 종류, 상표, 기술적 특성 등)

.....
.....

다음 표준에 적합함 (번호, 기호, 명칭)

.....
.....

추가 사항 (표준 적합성 선언의 근거, 적합성 평가 방법 등)

.....
.....

평가 유형:

+ 평가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인증 기관의 명칭, 인증서 번호, 인증서 발급일

.....
.....

+ 자체 평가: 단체·개인의 책임자가 자체 평가서에 서명한 날짜

.....
.....

...(단체·개인의 명칭)은/는..... 자신이 생산, 경영, 보관, 운송, 사용, 운영하는
(제품, 상품, 공정, 서비스,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의 적합성에 대해
보증하며 책임을 집니다.

....., 일 월 년.....

단체·개인의 대표

(서명, 직위 명시, 날인)

부록 IV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서 양식

(2026년 04월 09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14/2026/TT-BKHCN호 별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등록서

번호.....

신청인명:

주소:

전화번호:.....팩스:

E-mail: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제품, 상품, 공정, 서비스, 환경 또는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 (명칭, 형식, 종류, 상표, 기술적 특성 등)

.....
.....

다음 기술규정에 적합함 (번호, 기호, 명칭)

.....
.....

추가 사항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의 근거, 적합성 평가 방법 등)

.....
.....

평가 유형:

+ 평가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인증 기관의 명칭, 인증서 번호, 인증서 발급일

.....
.....

+ 자체 평가: 단체·개인의 책임자가 자체 평가서에 서명한 날짜

.....
.....

...(단체·개인의 명칭)은/는..... 자신이 생산, 경영, 보관, 운송, 사용, 운영하는 (제품, 상품, 공정, 서비스, 환경 및 기타 사회·경제 활동 대상)의 적합성에 대해 보증하며 책임을 집니다.

....., 일 월 년.....

단체·개인의 대표

(서명, 직위 명시, 날인)

부록 V

표준 적합성/기술규정 적합성 자체 평가 보고서

(2026년 04월 09일 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시행규칙 제14/2026/TT-BKHCN호 별자)

주관 기관 명칭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단체·개인명:

독립·자유·행복

번호:

.....년...월...일

표준 적합성/기술규정 적합성 자체 평가 보고서

1. 단체·개인명, 주소, 전화, 팩스:
 2. 제품, 상품 명칭:.....
 3. 평가 장소, 일자:.....
 4. 적용되는 표준/기술 규정의 번호:
 5. 제품·상품 시험기관 명칭:.....
 6. 적용 표준/기술규정에 따른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
.....
.....
.....
 7. 기타 사항 (해당하는 경우):.....
 8. 판정:
 - 제품·상품이 표준/기술규정에 적합함.
 - 제품·상품이 표준/기술규정에 부적합함.
- 선언된 적용 기술규정, 표준에 제품·상품의 품질이 적합함을 보증하며 제품·상품의 품질 및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평가자
(서명, 성명)

단체·개인 대표의 확인
(서명, 직위 명시, 날인)